

학 생 회 칙 관 리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2
제 2 조 적용 범위	2
제 3 조 기능별 책임	2

제 2 장 학칙 재·개정 및 폐기 절차

제 4 조 학칙 심의위원회 구성	2
제 5 조 학칙 제·개정 및 폐기 절차	2
제 6 조 학칙 번호 부여	2
제 7 조 학칙 심의	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학칙은 학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표 절차와 학칙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 “학칙”이라 함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의 행정 업무의 효율성·통일성을 위하여, 행정 업무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학칙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에 적용한다.

제3조 (기능별 책임)

- ① 학생회장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학칙의 정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② 학생회는 학칙의 모순 및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학생회장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회칙 제·개정 및 폐기 절차

제4조 (학칙 심의위원회 구성)

- ① 학칙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심의별 대표자를 위원으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 ② 학칙 심의위원회 구성은 「학칙 2 미디어·광고학부 위원회 관리」에 따른다.

제5조 (학칙 심의위원회 구성)

학칙을 제·개정 및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는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법령·훈령의 제·개정 및 폐지로 인해 단순 수정이 필요한 경우와 단순 오탈자 정정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4호의 절차를 생략하고 발령할 수 있다.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의 과반수 이상 서명 시, 다음 절차로 진행할 수 있다.)

※ 서명본은 발령 이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1. 제·개정 또는 폐지 이유서 초안 작성
- 2. 학생회 집행부 의견 수렴 및 서명
- 3. 실장단 의견 수렴 및 서명
- 4. 제2·3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부생 15명 이상의 의견 수렴 및 서명
- 4-1. 필요에 의해 학부장 의견 수렴 및 서명
 - ※ 학부장 서명이 없더라도, 학칙은 학생 자치기구와 자유성 확립을 위해, 학칙 발령이 가능하다.
- 5. 심의 결과 반영 후, 발령

제6조 (학칙 번호 부여)

학칙 관리	학칙 1
위원회 관리	학칙 2

학생회 운영	학칙 3
실습실(소모임) 운영	학칙 4
선거 관리	학칙 5
감사 관리	학칙 6

제7조 (학칙 심의)

- ① 학칙 심의 시기
 1. 정 기 : 한 학기 단위. 수정소요 파악 후, 방학 기간 동안 심의
 2. 수 시 : 학생회장 필요시 또는 법령·훈령의 재·개정 또는 폐지 시
- ② 정기 심의 및 학생회장 필요시에 진행하는 심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③ 수시 심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부 칙

1. 본 학칙은 학칙 1 제2장 5조에 해당하는 서명이 끝나는 즉시 유효하다.
2.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및 사회과학대학 학칙을 적용한다.
3. 학칙 우선순위는 미디어·광고학부, 사회과학대학, 총학생회 순으로 적용한다.

별 표 목 차

번 호	제 목	조 항	변 수
1	심의 위원회 서명 양식	제5조	제3면
2	학칙 제·개정 또는 폐지 이유서	제5조	제1면

작 성 자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학생회장 김도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학칙 심의위원회(학생회 집행부) 의결서

개 요

- 일 시 / 장 소 : ‘YY.MM.DD(요일) / 장소
- 심의위원회 :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기획집행국, 재정복지국, 소통홍보국, 디자인국

내 용

본 심의위원회는 학칙 제·개정 및 폐기 심의를 위해 편성됐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한 학칙 심의를 진행함.

* 제·개정 및 폐기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한다.

심의위원회 의결

구 분	직 책	학 번	성 명	의 결(O/X)	서 명
1	학생회장				
2	부학생회장				
3	기획집행국 국장				
4	디자인국 국장				
5	소통홍보국 국장				
6	재정복지국 국장				

20____ . ____ . ____

찬성__표, 반대__표, 기권__표로 과반수가 찬성 / 반대 하였으므로, 본 심의 내용은 가결 / 부결 합니다.

학칙 심의위원회(실장단) 의결서

개 요

- 일 시 / 장 소 : ‘YY.MM.DD(요일) / 장소
- 심의위원회 :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영상제작실습실, 사진실습실, 멀티미디어실습실, 광고PR학회, 로니즈, 워닝, 크러쉬, 책볼레, 카스테라, 까치볼, 씨리얼

내 용

본 심의위원회는 학칙 제·개정 및 폐기 심의를 위해 편성됐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한 학칙 심의를 진행함.

* 제·개정 및 폐기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한다.

심의위원회 의결

구 분	직 책	학 번	성 명	의 결(O/X)	서 명
1	학생회장				
2	부학생회장				
3	영상제작실습실				
4	사진실습실				
5	멀티미디어실습실				
6	광고PR학회				
7	로니즈				
8	워닝				
9	크러쉬				
10	책볼레				
11	카스테라				
12	까치볼				
13	씨리얼				

20____ . ____ . ____

찬성__표, 반대__표, 기권__표로 과반수가 찬성 / 반대 하였으므로, 본 심의 내용은 가결 / 부결 합니다.

학칙 심의위원회(학부생) 의결서

개 요

- 일 시 / 장 소 : ‘YY.MM.DD(요일) / 장소
- 심의위원회 :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사전모집 된 학부생 15명

내 용

본 심의위원회는 학칙 제·개정 및 폐기 심의를 위해 편성됐으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한 학칙 심의를 진행함.

* 제·개정 및 폐기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한다.

심의위원회 의결

직 책	학 번	성 명	의 결(O/X)	서 명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____ . ____ . ____

찬성__표, 반대__표, 기권__표로 과반수가 찬성 / 반대 하였으므로, 본 심의 내용은 가결 / 부결 합니다.

학칙 제·개정 또는 폐지 이유서

학칙 명칭 : 미디어·광고학부 학생회칙

작성자

직 책	성 명	학칙 번호	학칙 명칭

제·개정 또는 폐지 이유

주요 제·개정 내용(폐지 시 미작성)

위원회 관리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2

제 2 조 적용 범위 2

제 2 장 위원회 편성

제 3 조 각 위원회 역할 및 구성 2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학칙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학칙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에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 편성

제3조 (각 위원회 역할 및 기능(붙임#1 참조))

- ① 각 위원회 대표자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원들을 소집할 수 있다.
- ② 위원 소집은 회의 개최 6시간 전까지는 회의록과 함께 각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부 칙

- 1. 본 학칙은 학칙 1 제2장 5조에 해당하는 서명이 끝나는 즉시 유효하다.
- 2.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및 사회과학대학 학칙을 적용한다.
- 3. 학칙 우선순위는 미디어·광고학부, 사회과학대학, 총학생회 순으로 적용한다.

별 표 목 차

번호	제목	조항	변수
1	각 위원회 구성, 역할 및 기능	제5조	제1면

작성 자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학생회장 김도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각 운영/위원회 구성, 역할 및 구성

구 분	구 성	역 할 · 기 능	운 영 절 차
1. 학칙 심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장/부학생회장 • 학생회 집행부 • 실장단 • 사전 모집된 학부생 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칙 제·개정 및 폐기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 한 학기 주기 • 수시 - 학생회장 필요 시 - 법령·훈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시
2. 선거관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장/부학생회장 • 학생회 집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광고학부 선거의 공정한 관리 및 후보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족 시기 - 선거 기간
3.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장/부학생회장 • 실장단 • 참여 희망 학부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광고학부 지원금 및 회비의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일정 - 최소 한 학기 당 1회 실시 - 학생회장 필요 시 - 학부생 요청 시
4. 인수인계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장/부학생회장 • 학생회 집행부 국장 • 실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광고학부 차기 연도 운영에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한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족 시기 - 선거 결과 공포 다음 날 - 학생회장 필요 시 - 운영위원회 요청 시
4. 공청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장/부학생회장 • 학생회 집행부 • 실장단 • 공청회 요구자 • 공청회 피요구자 • 참여 희망 학부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광고학부생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시기 - 공청회 요구자가 있을 시, 일주일 이내로 방법, 일시, 장소를 알리고 개최한다. • 공청회 위원장 - 공청회 위원장 우선순위는 1. 학생회장 2. 부학생회장 3. 학생회 집행부 고학번 순 4. 실습실장 고학번 순 5. 소모임장 고학번 순 6. 부실습실장 고학번 순 7. 부소모임장 고학번 순으로 한다.
5. 학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장/부학생회장 • 학생회 집행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광고학부 의결기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소집 - 학생회장 필요 시 - 학생회 집행부 요청 시
6. 실장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장/부학생회장 • 실장단 • 참여 희망 학부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광고학부 의결기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소집 - 학생회장 필요 시 - 실장단 요청 시
7. 실습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실장/부실습실장 • 실습실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의 관심사 및 목적을 가진 미디어·광고학부생들의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실습실장에게 권한 위임
8. 소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임장/부소모임장 • 소모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의 관심사 및 목적을 가진 미디어·광고학부생들의 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소모임장에게 권한 위임

학생회 운영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3
제 2 조 적용 범위	3

제 2 장 학생회 편성

제 3 조 학생회원 자격	3
제 4 조 학생회원의 권리와 의무	3

제 3 장 학생총회

제 5 조 지 위	3
제 6 조 구 성	3
제 7 조 기능 및 권한	3
제 8 조 의 장	4
제 9 조 소 집	4
제 10 조 탄 핵	4

제 11조 의결 및 공개	4
---------------------	---

제 4장 학생회 운영위원회

제 12조 지 위	4
제 13조 구 성	4
제 14조 의결 및 공개	4
제 15조 업무 부서	5

제 5장 실장단 운영위원회

제 16조 지 위	5
제 17조 구 성	5
제 18조 의 장	5
제 19조 의결 및 공개	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학칙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각 학부생들의 개성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창조적이며 발전적인 학문 연구를 지향함으로써 정의로운 민주사회의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학칙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에 적용한다.

제2장 학생회 구성

제3조 (학생회원 자격)

학생회원의 자격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의 모든 재학생에게 부여된다. 단, 휴학한 자는 자격이 일부 정지되며, 대학원생은 본회의 회원에서 제외된다.

제4조 (학생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본회의 각종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권한을 가진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나 회원의 정당한 자치활동을 침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장 학생총회

제5조 (지 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6조 (구 성)

학생총회의 구성원은 본회의 전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기능 및 권한)

- ① 학생총회는 회원 전체에 관련된 중대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 ② 학생총회는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 ③ 학생총회는 학생회장 · 부학생회장 · 실습실장 · 소모임장 탄핵 소추 및 파면권을 갖는다.
- ④ 학칙 제·개정안 발의 및 심의권을 갖는다.

제8조 (의 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학생회장이 된다.
단, 학생회장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학생회장도 부재 시 학생회 집행부 구성원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소 집)

- ① 학생총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시 소집한다.
- ② 학생총회는 학생회장 개인, 학생회 집행부 1/3 이상, 재학생 1/50 이상의 요구 중 하나라도 충족 시, 학생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③ 학생총회의 소집은 총회 소집 요구가 있는 후 24시간 내에 공고하여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단, 소집 요구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7일이 초과할 수 있다.

제10조 (탄 핵)

학생총회는 학생회장·부학생회장·실습실장·소모임장(이하 실장단)이 본 학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탄핵 또는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 ① 해당 집단의 회원 1/10 이상의 요구로 실장단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
- ② 실장단 탄핵 의결 시 해당 집단의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탄핵 대상자는 참석 인원 및 회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의결 및 공개)

- ① 학생총회는 출석 인원의 제한 없이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탄핵의 경우는 제10조에 따른다.
- ② 의장은 학생총회 종료 후 결과를 7일 이내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제4장 학생회 운영위원회

제12조 (지 위)

학생회 운영위원회(이하 학생회 집행부)는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를 대표하는 학생 자치 기구 및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13조 (구 성)

- ① 학생회 집행부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생회 운영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 ②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학생회 운영위원회원들을 구성할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 ③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 학생회 집행부는 납부할 권한만을 갖는다.

제14조 (의결 및 공개)

- ① 학생회 운영위원회 의결은 학생회 집행부 2/3의 참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 인원 중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학생회 집행부가 아닌, 미디어·광고학부 모든 재학생이 참석이 가능하다.
단, 집행부 2/3의 참석이 있어야만, 의결이 이루어진다.
- ② 학생회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은 회의 종료 후, 원하는 학생회원이 있다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15조 (업무 부서)

학생회 집행부는 아래 각 부서를 두고, 그 직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기획국 : 본회의 행사 및 운영의 계획, 조정에 관한 모든 사항
- ② 집행국 : 본회의 행사 및 운영을 직접적으로 집행
- ③ 사무국 : 본회의 회계 및 재정 운영감사에 대한 모든 사항
- ④ 소통국 : 본회의 행정 및 학생복지에 관한 모든 사항
- ⑤ 홍보국 : 본회의 사업에 관한 대·내외 홍보의 모든 사항
- ⑥ 위의 부서와 관련된 학생회 집행부 체계는 해당 시기마다 자율성을 최대한 살리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개편될 수 있다.

제 5장 실장단 운영위원회

제 16조 (지 위)

실장단 운영위원회는 학생회 운영위원회에 버금가는 학생 자치기구 및 최고 집행기구다.

제 17조 (구 성)

실장단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실습실(소모임)장과 부실습실(소모임)장으로 구성된다.

제 18조 (의 장)

실장단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학생회장이 된다.

단, 학생회장 부재 시, 부학생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학생회장도 부재 시, 실장단 구성원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19조 (의결 및 공개)

- ① 실장단 운영위원회 의결은 실장단 1/2의 참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 인원 중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실장단이 아닌, 미디어·광고학부 모든 재학생이 참석이 가능하다.
 - 단, 실장단 1/2의 참석이 있어야만, 의결이 이루어진다.
- ② 실장단 운영위원회 의결사항은 회의 종료 후, 해당 실습실(소모임)에 결과를 공개할 권한을 가진다.

부 칙

- 1. 본 학칙은 학칙 1 제2장 5조에 해당하는 서명이 끝나는 즉시 유효하다.
- 2.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및 사회과학대학 학칙을 적용한다.
- 3. 학칙 우선순위는 미디어·광고학부, 사회과학대학, 총학생회 순으로 적용한다.

작 성 자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학생회장 김도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실습실 (소모임) 운영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2
제 2 조 적용 범위	2

제 2 장 실습실(소모임) 편성

제 3 조 실습실(소모임) 편성 조건	2
제 4 조 실습실(소모임)원 자격	2
제 5 조 실습실(소모임)원의 권리와 의무	2
제 6 조 실습실(소모임) 회칙	2

제 3 장 실습실(소모임)장

제 7 조 지 위	2
제 8 조 업무 및 권한	3
제 9 조 탄 핵	3
제 10 조 임 기	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학칙은 자유로운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각 학부생들의 개성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창조적이며 발전적인 학문 연구와 자유로운 대학 문화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학칙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에 적용한다.

제2장 실습실(소모임) 편성

제3조 (실습실(소모임) 편성 조건)

- ① 실습실(소모임)은 실습실 최소 15명, 소모임 최소 10명의 학부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② 실습실(소모임)은 편성을 위해 학부장 교수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 ③ 실습실(소모임)의 신설을 위해서는 실장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진행되어야 하고 의결에 대한 내용은 본 학칙의 제5장 19조를 따른다.

제4조 (실습실(소모임)원 자격)

- ① 실습실(소모임)원의 자격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의 모든 재학생에게 부여된다.
- ② 군휴학을 제외한 2학기 이상의 비활동자는 해당 실습실(소모임)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단, 다시 자격을 얻고자 할 경우, 실습실(소모임)장의 허가 있을 시, 가능하다.
- ③ 대학원생은 본회의 회원에서 제외된다.

제5조 (실습실(소모임)원의 권리와 의무)

- ① 실습실(소모임)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실습실(소모임)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② 실습실(소모임)의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권한을 가진다.
- ③ 실습실(소모임)의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 ④ 실습실(소모임) 회원의 정당한 자치활동을 침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저항할 권리를 갖는다.

제6조 (실습실(소모임) 회칙)

실습실(소모임) 회칙은 본 학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회칙을 가진다.

제3장 실습실(소모임)장

제7조 (지위)

실습실(소모임)장은 실습실(소모임)을 대표하는 자이다.

단, 실습실(소모임)장 부재 시, 부실습실(소모임)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실습실(소모임)장도 부재 시,

회원 구성원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업무 및 권한)

실습실(소모임)장은 회원의 자유로운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업무 진행에 있어서 민주적으로 의사를 수렴하고 학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업무 진행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갖는다.

- ① 실습실(소모임) 고유의 특성을 살리고, 실습실(소모임)의 자율성 및 체계 유지의 의무를 가진다.
- ② 실습실(소모임) 간의 사업 및 행사 일정 조정 업무를 맡는다.
- ③ 실습실(소모임) 내 자체 감사 진행 권한을 갖는다.
- ④ 실습실(소모임) 운영에 전반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⑤ 실장단 운영위원회의 대표로서 참석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탄핵)

- ① 실습실(소모임)장은 본 학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탄핵 또는 해임을 강요받을 수 있다.
- ② 해당 실습실(소모임)원 요청 시, 실습실(소모임)장은 학생총회의 무조건 참석을 해야 한다.
- ③ 방식은 학칙 3의 제3장에 따른다.

제10조 (임기)

실습실(소모임)장의 임기는 선거년도 종강총회부터 차기년도 종강총회까지로 정한다.

부 칙

1. 본 학칙은 학칙 1 제2장 5조에 해당하는 서명이 끝나는 즉시 유효하다.
2.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및 사회과학대학 학칙을 적용한다.
3. 학칙 우선 순위는 미디어·광고학부, 사회과학대학, 총학생회 순으로 적용한다.

작 성 자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학생회장 김도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선거관리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4
제 2 조 적용 범위	4
제 3 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4 조 구 성	4
제 5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4
제 6 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4

제 3 장 선거인 명부

제 6 조 선거인 명부작성	5
제 7 조 명부 열람	5
제 9 조 이의 신청과 결정	5
제 10 조 선거인 명부 사본의 교부	5

제 4 장 후보자

제 11조 후보자 자격	5
제 12조 후보자 등록	6
제 13조 입후보자 심사	6

제 5 장 선거 운동

제 14조 선거 운동 기간	6
제 15조 규칙 확정 회의	6
제 16조 선거 홍보물	6
제 17조 공청회 개최	7
제 18조 금지 규정	7
제 19조 징 계	7

제 6 장 투 표

제 20조 선거일	7
제 21조 투표소 설치	7
제 22조 투표 시간	8
제 23조 투표 방법	8
제 24조 투표율 산정 방법	8

제 7 장 개 표

제 25조 개표 방법	8
제 26조 개표 참관	8

제 27조 무효표	9
제 28조 당선인 결정	9
제 29조 투표용지 보관	9

제 8장 재선거

제 30조 조 건	9
-----------------	---

제 9장 인수인계위원회

제 31조 구 성	10
제 32조 인수인계위원회 구성	10

제 10장 온라인 투표

제 33조 목적	10
제 34조 정의	10
제 35조 온라인 투표 시행 여부 결정	10
제 36조 온라인 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	10
제 37조 전자 선거인 명부의 작성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학칙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의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사회 건설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학칙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전 재학생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사전 신청한 휴학생의 선거권은 인정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 (구성(붙임 #1,2 참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미디어·광고학부 선거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족하는 기구이다.

- ① 미디어·광고학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선거관리위원은 현 학생회 집행부로 구성한다.
- ② 선관위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으며,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단, 사퇴 이후에는 피선거권이 주어지며,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선관위 임기는 선관위 전향부터 개표 집계 결과 공포 시까지 유지된다.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① 후보자 등록 및 자격 심사
- ② 선거 운동 관리
- ③ 선거인 명부 작성
- ④ 개표 및 투표행사에 대한 유효, 무효 판정 및 선포
- ⑤ 당선인 결정
- ⑥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기타 심사
- ⑦ 기타 선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 ① 선관위는 결정된 선거 일정에 의해 선거 공고 7일 전에 소집한다.
- ② 선관위 회의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위원장 판단 하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선관위의 의결은 선관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무효표 판정, 이의제기, 이의 신청 처리는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각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부장, 선관위의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선거인 명부

제7조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선관위는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① 휴학생, 대학원생, 외국인 학부생은 선거인에서 제외한다.

단, 사전 신청한 휴학생은 선거인에 포함한다.

② 1·2·3학년 재학생만 총 투표 대상자로 명부 작성을 한다.

단, 4학년 및 5학년 재학생은 예비 명부에만 포함시켜, 투표를 할 경우, 총 투표 대상자에 추가시킬 수 있다.

제8조 (명부 열람)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작성 완료일부터 명부 확정일까지 미디어·광고학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 (이의 신청과 결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확인이 될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이의 신청이 있는 후 72시간 이내에 심사·결정하며, 그 신청이 가결됐을 경우, 즉시 선거인 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선거권자에게 통지하며, 부결됐을 경우 타당한 이유와 함께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선거인 명부는 선거일 3일 전에 확정되며 확정된 이후에는 일체 수정할 수 없다.

제10조 (선거인 명부 사본의 교부)

선관위는 피선거권자가 선거인 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을 했을 때 명부 작성 완료인 경우, 지체 없이 명부의 사본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4장 후보자

제11조 (후보자 자격)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학생으로 학생자치활동에 열정을 가진 자로서 각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후보 : 3학기 이상 이수한 자

② 부후보 :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 정·부후보 모두 유급한 학기도, 등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 학생회비를 납부한 지, 1학기 이상이 된 자

④ 기타 자치 기구에도 소속되지 않은 자

제12조 (후보자 등록(붙임 #3 참조))

입후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등록 마감일 18시까지 다음의 서류를 선관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 ① 재학생 증명서(정·부후보 각 1부,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 ② 입후보 등록 신청서
- ③ 입후보 서약서
- ④ 입후보 공고문
- ⑤ 선거운동본부 명단 (운영할 경우만, 제출)
- ⑥ 미디어·광고학부생 추천인 40명의 서명

제13조 (후보자 추천)

- ①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및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본원은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추천은 이 시행세칙의 양식에 따라 선관위가 제작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③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기간 24시간 전에 추천서식을 배포한다.
- ④ 추천서식에는 후보의 성명 및 선본명만 명시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선본에 주의 1회를 부여한다.
- ⑤ 유세를 통한 추천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선본에 경고 1회를 부여한다.

제14조 (입후보자 심사)

- ① 선관위는 등록 마감 후 72시간 내에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 ② 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발견됐을 경우 즉시 후보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한다.
- ③ 입후보자 심사가 끝난 후, 즉시 후보자에게 통지하며, 미디어·광고학부생들에게 6시간 이내 공지한다.

제5장 선거 운동

제15조 (선거 운동 기간)

- ① 선거 운동 기간은 입후보자 공지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까지 할 수 있다.
단, 이외의 기간에는 일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제16조 (규칙 확정 회의)

선거 간, 공정하고 청렴한 선거를 위해 입후보자들을 선관위가 소집하는 회의를 말한다.

- ① 선관위는 후보 등록 후 규칙 확정 회의 일자를 공고한다.
- ② 각 입후보자는 규칙 확정 회의를 통해 선전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온라인 홍보 여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 ③ 입후보자 간 논의를 통해 2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에서 결정하여 각 입후보자에게 통보한다.

제 17조 (선거 홍보물)

입후보자를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물품과 방법을 말한다.

- ① 선거 홍보물에는 허위 사실이나 타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 ② 미디어·광고학부생들에게 혐오감 및 불안감을 조성하는 선거 홍보물은 사용할 수 없다.
- ③ 선관위에서 1호와 2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이라 판단 시, 즉각 폐기 시킬 수 있다.
- ④ 규칙확정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의 홍보물을 운용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이를 통제하지 않는다.

제 18조 (공청회 개최)

- ① 선관위는 공청회를 1회 개최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 및 선거인 중 1/3의 요청이 있을 시 무제한 개최할 수 있다.

- ② 선관위는 개최 시 공청회 개최 방법, 일시, 장소를 공지해야 한다.

제 19조 (금지 규정)

선거 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선거운동본부는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①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② 폭력,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선거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③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④ 선거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⑤ 규칙 확정 회의 내용에 반(反)하는 행위
- ⑥ 이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

제 20조 (징 계)

-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선거 운동간 학칙에 위배되거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함이 보일 경우 경고를 줄 수 있다.
- ② 경고는 1회당, 1일 선거 운동 금지를 당한다. 선거 운동 기간 이후, 경고를 받을 경우, 경고 2회로 간주한다.
- ③ 경고가 3회 누적될 경우 해당 입후보자는 즉각 해임 당한다.
- ④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경고 및 해임 당할 경우 미디어·광고학부생들에게 24시간 동안 공지해야 한다.
- ⑤ 입후보자는 경고를 당할 경우 24시간 이내 사과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 6장 투표

제 21조 (선거일)

선관위는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

제 22조 (투표소 설치)

- ① 선관위는 투표 시작 전까지 투표를 설치하되 선거일 3일 내에 투표 장소를 결정하여 공지해야 한다.
- ② 기표대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하며 기표대 안에는 어떠한 표시를 하면 안 된다.

- 단, 입후보자의 표어 및 소속과 성명을 기재한 표지를 게시할 수 있다.
- ③ 선관위는 투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선관위원을 2명씩 배치한다.
 - ④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본부 인원들은 선관위원 제한 구역을 들어올 수 없으며, 의도적으로 들어올 경우 경고를 줄 수 있다.
 - ※ 상황에 따라 온라인 선거가 진행될 경우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해 위 과정이 생략될 수 있으며 선관위 재량으로 진행된다.

제 23조 (투표 시간)

- 투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 단, 오후 6시에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권자에게는 시간이 넘어도 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
- ※ 상황에 따라 온라인 선거가 진행될 경우 전자투표 시스템에 의해 위 과정이 생략될 수 있으며 선관위 재량으로 진행된다.

제 24조 (투표 방법)

- ① 선거인은 학부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 기표소에서 용지에 기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 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 ③ 선거인의 잘못으로 기표를 잘못된 경우라도 용지를 재교부 받을 수 없다.
- ④ 동일 기표대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 ⑤ 선관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선관위원과 입후보자 참여 하에 투표함을 자물쇠로 봉하여 개표 장소로 옮겨야 한다.
- ※ 상황에 따라 온라인 선거가 진행될 경우 전자투표 시스템에 의해 위 과정이 생략될 수 있으며 선관위 재량으로 진행된다.

제 25조 (투표율 산정 방법)

투표율 산정은 전체 투표자 수/(선거인 명부 수+예비 명부 중 투표한 수)로 한다.

제 7장 개표

제 26조 (개표 방법)

- ① 선관위원장, 선관위원, 각 입후보자 개표 참관인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 확인 후 개표를 실시한다.
- ② 개표는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만 진행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개표 참관인은 언제든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개표 완료 후 개표 참관인들에 한해서 무효표에 대한 이의를 받을 수 있다.
- ④ 개표가 종료되면 위원장은 개표 집계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 ※ 상황에 따라 온라인 선거가 진행될 경우 전자투표 시스템에 의해 위 과정이 생략될 수 있으며 선관위 재량으로 진행된다.

제 27조 (개표 참관)

- ① 각 선거운동본부는 입후보자를 제외한 개표 참관인 1인을 선정할 수 있다.

- 단, 선거운동본부를 운영하지 않을 시에는 입후보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 ※ 상황에 따라 온라인 선거가 진행될 경우 전자투표 시스템에 의해 위 과정이 생략될 수 있으며 선관위 재량으로 진행한다.

제28조 (무효표)

- ①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② 어느 후보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 ③ 2개 이상의 후보자 란에 기표한 것
- ④ 어느 후보자 란에 기표한지 식별이 불가능 한 것
- ⑤ 선관위에서 제시한 기표 방법으로 기표하지 않은 것
- ⑥ 그 이외의 유·무효표 판정은 선관위원장이 한다.

제29조 (당선인 결정)

- ① 당선인 결정은 선거인 명부 중 50%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거 기간 동안 선관위로부터 받은 징계 횟수가 적은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그것마저도 같을 시에는 해당 후보자만으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②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 중 50% 이상의 투표와 유효표 중 2/3 이상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③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당선인을 공고해야 한다.

제8장 재선거

제30조 (조 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3호의 경우 선관위에서 심의하여 그 시기를 결정하며, 4호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실시한다.

- ① 후보자 혹은 당선인이 없을 경우
- ② 선거 무효 또는 당선 무효가 결정이 됐을 경우
- ③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사퇴 및 사망하게 됐을 경우
- ④ 임기 중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에 결원이 생긴 경우

단, 4호의 경우에는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일 때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제9장 인수인계위원회

제31조 (구 성)

인수인계위원회(이하 인수위)는 미디어·광고학부 차기 연도 운영에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하여 발족하는 기구이다.

- ① 미디어·광고학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인수인계위원은 현 학생회 집행부 국장과 실장단으로 구성한다.
- ② 인수위 임기는 개표 집계 결과 공포 다음 날부터 7일까지 유지된다.
단, 학생회 선거 무산 시 실장단 인수인계는 기존에 공고된 개표 일정으로 진행한다. 각 실습실(소모임)은 차기 연도 실장단을 선거 마감일까지 선출하여 해당 일정과 동일하게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제32조 (인수인계위원회 운영)

- ① 해당 연도 인수위는 차기 연도 운영위원회(차기 연도 학생회, 실장단)와 상호 협력 하에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 ② 인수위는 해당 연도 인수·인계 자료를 가장 최신의 정보로 유지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 ③ 인수위는 인수인계 후 완료 사실을 위원장에게 72시간 이내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 ④ 인수위는 차기 연도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위원장의 판단 하에 재소집할 수 있다.

제10장 온라인 투표

제33조 (목적)

이 세칙은 온라인 투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이 회의 미디어·광고학부 학생회장단(정·부회장) 선거가 온라인으로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 (정의)

“온라인 투표”란 투표용지를 사용한 기존의 기표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모바일이나 웹 환경에서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진행되는 투표를 말한다.

제35조 (온라인 투표 시행 여부 결정)

- ① 선거관리위원회 규칙확정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시행 여부를 의결한다.
- ② 온라인 투표 시행 여부가 결정되면, 이 회의 회원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③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온라인 투표의 시행 여부를 반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반복 사유를 이 회의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36조 (온라인 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를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온라인 투표 시행과 관련한 정보를 선거인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시작 10일 전까지 전자 선거인 명부를 완성하고 온라인 투표 진행을 위한 시스템 점검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진행을 위한 수집정보를 최소한으로 하며 선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밀투표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익명화 및 암호화하여야 한다.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와 관련한 상세한 절차를 투표시행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 (전자 선거인 명부의 작성)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 선거인 명부 작성에 필요한 성명, 휴대번호, 소속, 학번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부 칙

- 1. 본 학칙은 학칙 1 제2장 5조에 해당하는 서명이 끝나는 즉시 유효하다.
- 2.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및 사회과학대학 학칙을 적용한다.
- 3. 학칙 우선순위는 미디어·광고학부, 사회과학대학, 총학생회 순으로 적용한다.

작 성 자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학생회장 김도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사 퇴 공 고

단 위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소 속 :

직 책 :

성 명 :

사퇴 사유 :

제 ____대 미디어·광고학부 차기 학생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학칙 5 4장 11조에 의거, 현재 재임 중인 미디어·광고학부 학생회 ____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상기 본인은 미디어·광고학부 학생회 ‘____’의 ____직을 맡아, 학부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재임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____년 ____월 ____일부로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미디어·광고학부 재학, 휴학 중인 학우분들의 양해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미디어·광고학부 _____학번

작성자 : _____(인)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20__년 학생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발족 공고

미디어·광고학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학생회장 선출을 위해 학칙 5 2장 4조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 및 집행권을 당해 연도 학생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구로서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미디어·광고학부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미디어·광고학부 부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미디어·광고학부 운영위원

미디어·광고학부 운영위원

미디어·광고학부 운영위원

미디어·광고학부 운영위원

미디어·광고학부 운영위원

미디어·광고학부 운영위원

미디어·광고학부 운영위원

미디어·광고학부 운영위원

이상 인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본 선거관리위원회는 학칙5 2장 5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 ① 후보자 등록 및 자격 심사
- ② 선거 운동 관리
- ③ 선거인 명부 작성
- ④ 개표 및 투표행사에 대한 유효, 무효 판정 및 선포
- ⑤ 당선인 결정
- ⑥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기타 심사
- ⑦ 기타 선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

20__년 __월 __일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 등록 신청서

구 분	정후보	부후보
성 명		
학 번		
등록 학기		
개표 참관인		
핵심 공약		
공약 이행 계획		

정후보 입후보자 : (인)
 부후보 입후보자 : (인)
 선거관리위원장 : (인)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 서약서

선거운동본부 _____의 정후보 _____와(과) 부후보 _____은(는) 20____년도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학생총선거에 임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를 이룰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선본은 학생회장 정·부 후보 자격으로 선거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 타 선본에 대한 비방 및 중상모략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선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사무를 방해하지 않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엄격히 준수하며 인정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선본은 선거와 관련하여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선거시행세칙을 숙지하며 이를 지킬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 선본은 선거세칙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을 행하였을 경우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세칙에 따른 징계나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____. ____ . ____

서약자 소속 :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정 후보 입후보자 : _____ (인)
 부 후보 입후보자 : _____ (인)
 선거관리위원장 : _____ (인)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 공고문

약 력	사 진	사 진	약 력
	성 명(정후보)	성 명(부후보)	

후보자 인사말
선거 공약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본부 명단

구 분	학 번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0____. ____ . ____

정 후보 입후보자 : _____ (인)

부 후보 입후보자 : _____ (인)

선거관리위원장 : _____ (인)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추천인 명단

구 분	학 번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20____. ____ . ____

정후보 입후보자 : _____ (인)

부후보 입후보자 : _____ (인)

선거관리위원장 : _____ (인)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관리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3
제 2 조 적용 범위	3

제 2 장 감사위원회

제 3 조 구 성	3
제 4 조 구성 시기	3
제 5 조 권 한	3

제 3 장 감사특별위원회

제 6 조 구 성	3
제 7 조 구성 시기	3
제 8 조 권 한	3

제 4 장 감 사

제 9조 감사 대상	4
제 10조 감사 시기	4
제 11조 감사 자료	4
제 12조 결과 보고	4

제 5 장 징 계

제 13조 목 적	4
제 14조 징계 사유	4
제 15조 징계 내용	5
제 16조 징계 방법	5
제 17조 이의 제기	5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학칙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각 자치 기구의 올바르고 공정한 예산 집행으로 학부생들에게 신뢰를 쌓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여 각 자치 기구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학칙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에 적용한다.

제2장 감사위원회

제3조 (구성)

감사위원회는 미디어·광고학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감사위원은 현 학생회 집행부로 구성한다.

제4조 (구성 시기)

평시에는 학생회 집행부로 운영되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다.

제5조 (권 한)

감사위원회 미디어·광고학부 각 자치 기구의 예·결산 제출 요구 및 예·결산 문제에 대해 시정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3장 감사특별위원회

제6조 (구성)

- ① 감사특별위원회는 미디어·광고학부 실장단 지원자 중 최고 학번이 위원장으로, 각 실장단은 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감사특별위원을 희망하는 학부생은 감사위원장의 판단 하, 구성시킬 수 있다.
단, 학생회 집행부 인원은 구성시킬 수 없다.

제7조 (구성 시기)

감사특별위원장 필요 시, 언제든지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권 한)

감사특별위원회는 미디어·광고학부 학생회 집행부의 예·결산 제출 요구 및 예·결산 문제에 대해 시정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제4장 감사

제9조 (감사 대상)

본 학칙에 의한 감사 대상은 미디어·광고학부 내에 있는 모든 자치 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감사 집행 기구는 감사 대상에 따라 다르다.

제10조 (감사 시기)

감사 시행 7일 전에 각 기구에 통보해야 되며, 시기는 다음과 같다.

- ① 학부생 50명 이상의 서명 요구가 있을 경우
-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③ 종강 월의 마지막 주

제11조 (감사 자료)

- ① 예·결산안
- ② 영수증철
- ③ 통장사본
- ④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2조 (결과 보고)

각 위원회는 감사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원하는 미디어·광고학부생이 있다면 열람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제5장 징 계

제13조 (목 적)

감사 대상 기구가 올바른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였을 때 이에 대한 시정의 촉구와 반성과 전진의 계기를 주어 이후 더 발전적이고 책임감 있는 예산 집행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제14조 (징계 사유)

- ① 감사 자료가 미제출 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 했을 경우
- ② 감사 대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불응했을 경우
- ③ 집행 내용에 오차가 발생한 경우
- ④ 각 기구 부서장들이 올바른 역할 수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 ⑤ 기타 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 발생한 경우

제 15조 (징계 내용)

- ① 주의
- ② 경고
- ③ 지원금 감축 (減縮)

지원금 감축 징계를 받은 실습생(소모임)은 지원금 1/3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지원을 정지 시킨 후 현 학생회 지원금으로 이월시켜야 한다. (단, 최대 50만원 감축 가능)

학생회 집행부의 경우 학생회비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정지 시킨 후, 다음 학생회로 이월시켜야 한다. (단, 최대 100만원 집행 정지 가능)

- ④ 해당 기구 부서장에 대한 탄핵 발의
- ⑤ 학교 당국에 의한 처벌 요구

제 16조 (징계 방법)

징계 방법은 각 위원회의 2/3의 찬성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주의 2회 = 경고1회, 경고 3회 = 지원금 감축으로 집행한다.

제 17조 (이의 제기)

징계를 받은 기구 및 대상자는 징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때, 위원회는 해당 내용에 대해 재심의하여 해당 기구 및 대상자에게 통보해줘야 하며, 추후 재심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부 칙

1. 본 학칙은 학칙 1 제2장 5조에 해당하는 서명이 끝나는 즉시 유효하다.
2. 본 학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대학교 총학생회 및 사회과학대학 학칙을 적용한다.
3. 학칙 우선순위는 미디어·광고학부, 사회과학대학, 총학생회 순으로 적용한다.

작 성 자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학생회장 김도은

국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광고학부 